

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

조례 폐지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10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

조례 폐지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53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: 생략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‘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’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는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, 상위법인 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